



## 판매 표준 약관 및 조건

- 1. 약관에 대한 동의.** 대문자로 정의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판매자의 견적이나 인보이스에 다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판매 약관 및 조건 (“**약관**”)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판매를 규율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구매 주문이나 다른 형태의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문상의 거래 관련 내용 제외하) 임의의 약관과 조건은 모두 효력이 없다. 구매자는 주문을 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가 판매 및 납품한 상품과 서비스는 확정적으로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정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견적 또는 인보이스에 표시되어 있다. “**상품**”은 모든 설비, 제품, 또는 견적이나 인보이스에 기재된 재료가 포함된다. “**서비스**”는 견적이나 인보이스에 기재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견적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급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견적을 의미하고 발급일로부터 30 일 동안 유효하다. “**주문**”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약속을 의미한다. “**인보이스**”는 판매자가 접수한 주문에 대해 구매자에게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서면 송장을 말한다.
- 3. 주문.** 판매자에게는 주문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구매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수락 여부는 구매자의 신용등급 및 판매자의 기타 요구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에 서면 승인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4. 가격과 세금.** 가격은 견적 또는 판매자의 게시된 가격표에 명시된 것이다. 가격과 본 약관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가격은 판매세, 사용세, 소비세 또는 기타 유사한 세금이나 관세 (이하 “**세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납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관 수수료, 브로커 수수료, 세금 및 기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아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구매자는 즉시 그러한 세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 5. 대금 지불.** 구매자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0 일내로 달러 (또는 인보이스에 지정된 화폐로) 판매자가 지정한 계정에 송금을 하거나 수표의 방식으로 청구된 전부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 지불은 판매자가 계산을 정산한 금액을 받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분납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단계의 인보이스를 발급할 권리가 있고 구매자는 해당 단계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상계, 반대 청구, 할인, 감면 등 방식으로도 대금을 공제 없이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a) 지불기한의 익일로부터 지연일수 1 일 당 연체금액에 연간 1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일까지 가산, 또는 (b)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6. 납품 및 검수.**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자가 지정한 시설 (인코텀스 2010)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납품한다. 구매자는 운송비, 보험료, 기타운송료 및 기타 포장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규정된 시일에 납품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상품을 분납할 권리가 있다. 구매자가 납품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모든 손해, 손상, 부족 또는 기타 불합치 사항을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납품 시 상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통지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없고 인보이스상의 상품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상품의 배달을 중지 또는 지연시킬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구매자가 상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보관하거나 상품의 보관을 주선할 수 있고 구매자는 해당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구매자는 배송시점까지 상품의 보관 및 보험과 관련한 합리적인 비용을 즉시 지급한다. 판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는 어떠한 반품도 접수하지 않는다.



**7. 위험과 소유권.** 해당 인코텀스에 따라 상품이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상품의 손해 또는 손상의 위험은 구매자에게로 이전된다. 판매자가 상품 인보이스 가격의 전액을 수령하면 상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 되기 전까지는 구매자는 상품의 수신인 신분으로서 판매자의 수탁인의 역할을 한다. 구매자는 본 조항에서 설명하는 손실이나 손해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장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상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에 합의한다.

**8. 담보권.** 구매자는 대금이 전액 지불되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미납부분에 대해 담보권을 부여한다. 판매자는 해당 담보권에 대해 채무상황표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담보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표 기타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9. 제한적 보증.**

a. **상품.** 견적 또는 판매자가 공지한 상품의 규격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제조한 상품은 선적일로부터 12 개월의 기간 동안 재료 및 공정에 결함이 없는 것을 보증한다. 본 보증 하에서 구매자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판매자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자유재량권에 의해 수리하거나 합격품으로 결함이 있다고 입증된 상품을 교체하는 것뿐이다. 판매자의 요구와 승인을 득한 경우, 구매자는 운반비를 선불 후 판매자에게 결함이 있는 상품을 반환한다. 판매자의 공급처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판매자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한 부품에 대한 보증 또는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어떠한 보증도 구매자에게 이전할 것이며 공급처들의 보증내용과 관련해서 구매자가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을 보조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b. **서비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해당 산업 기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것임을 보장한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고 또는 인 증은 제공일자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고, 제공일 이후의 보장이거나 보증이 아니다. 판매자의 유일한 의무와 본 약관상 서비스에 대한 보증 위반에 대한 구매자의 유일하고 고유한 보상방법으로서, 판매자는 위반의 이유가 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서 위반의 이유가 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는 판매자가 결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90 일 내에 해당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고 판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c. **제외사항.** 위의 제한적 보증은 구매자가 상품, 서비스에 대해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 오용, 사고, 남용, 부주의, 정상적인 마손 및 분열, 부적절한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으로 인한 결함과 손해, 또는 구매자거나 제삼자의 부주의 및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문제, (ii) 소모성 상품 (유일한 보증이 선적 시점 기준으로 결함 및 재료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임), (iii) 약관의 명시적인 보증 내용이 판매자가 공지한 교체주기에 대한 권고를 넘어서는 경우, (iv) 결함이 있는 상품 제거 또는 교체에 대한 리콜이나 노무비용, (v) 결함 있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 3 자가 다시 제공한 내용, (vi) 판매자가 제조하지 않은 제품이나 상품의 결함 및 판매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 (vii) 구매자의 재료 또는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 또는 (viii) 특정 일자 기준으로 인증이 된 서비스의 부분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인증 또는 요약이 이루어진 날짜 이후 발생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10. 책임 부인.** 약관에 규정된 명시보증을 제외하고, 판매자 및 각 공급업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법률적 보증을 하지 않고, 이에 는 소유권, 매매적성, 특정 용도의 적절성, 비침해 또는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급, 사용 및 거래에 대한 보증 등이 포함되지 않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1. 기밀정보.**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기술 및 / 또는 영업 정보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기밀로 표시되거나 또는 그 성질상 내재적으로 기밀이라면, 제공받은 당사자는 엄격하게 비밀 유지를 하고 상품 제조, 판매, 구매 또는 상품 사용이나 본 계약에 의거한 당사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2. 지적 재산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판매자는 어떠한 특허, 저작권, 마스크 작품, 영업 비밀, 상표 및 상품과 서비스의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소유하고 이를 보유한다.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행위는 판매자가 고유한 로고와 브랜드의 사용권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허여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미리 표시하거나 포장한 상품의 재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판매자의 상표나 상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 권리침해행위.**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는 구매자를 상품이 미국에서 등록된 유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제삼자 청구로부터 면책하고 방어하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판매자는 아래 원인에서 기인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된 청구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a) 판매자가 의도하였거나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기타 상품이나 재료랑 결합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b) 구매자의 특정규격 또는 디자인에 의해 제조된 상품. 상품이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었거나 판매자의 의견에 따라 이와 같은 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판매자는 그 재량으로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구매자를 위해 상품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쟁취한다. (ii)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재료를 교체하거나 수정한다. 또는 (iii) 이러한 상품의 반품을 승낙하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상품의 실제 대금을 환불한다. 이와 같은 면책은 아래의 경우 이루어진다: (Y) 구매자는 즉시로 권리침해 청구사유를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Z)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해당 권리침해 청구에 대한 방어의 단독결정권을 이전하고 청구와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판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구매자는 그 어떠한 침해배상 해결의 책임, 어떠한 청구의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는 권리침해 청구에 대한 구매자의 유일한 구제 수단을 규정하였다.

**14. 책임 제한.** 본 약관에 반대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적용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A) 어떤 상황에서도 판매자 또는 그 공급자들이 구매자 혹은 제삼자에 대해서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비용,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판매 또는 이용의 결과로 발생한 특수, 간접, 예시, 우연, 징벌 또는 결과 손해(이윤손해, 업무중단 혹은 임의의 기타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는 해당 책임이 계약상 책임이든, 소홀, 침범행위, 보증 혹은 기타 부정당한 행위 혹은 누락으로 인한 책임(공급자가 같은 종류 손해 초래 가능성을 인식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라 해도 동일하다; (B) 공급자의 모든 배상책임은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고, 해당 책임이 발생한 주문으로 인해서 판매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5. 면책.** 적용법률이 허용하는 최대범위 내에서 구매자는 공급자 및 매개 소속회사, 계열사, 모회사, 승계인과 양수인의 과거와 현재의 동사, 고충직원, 사원, 대리인(이하 “공급자 피면책자”)을 공급자 피면책자들이 구매자의 상품 혹은 서비스의 구매, 판매 또는 이용(구매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의 남용 혹은 임의의 기타 행위 혹은 누락, 고의적인 부정당행위 혹은 과실행위로서 주동적/피동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연결되어서 입거나, 부담하거나, 소송, 청구 기타 절차에서의 방어를 해야 하는 모든 손실, 손해, 채무, 요구, 배상, 행위, 소송, 판단, 소송비용, 법률 혹은 기타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책임”)등으로부터 방어하고, 면책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급자 피면책자 혹은 그 공급자들의 고의적인 부정당행위 혹은 소홀에 의해 초래된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할 의무가 없다.

**16. 개인정보 관련 통지.** 판매자는 취급자로서 구매자 및 그 직원 및 대표자들과 관련해서 아래의 목적으로 이름,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우편주소 (“개인정보”) 등 특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개인정보를 전세계의 계열사들과 공유할 수 있다. 판매자 및 계열사들은 또한 적용되는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법령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공급활동에 대해서 구매자와 의사연락하고, 고객관리 목적 기타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업관계와 관련된 적법한 사업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개인정보는 판매자의 전세계 본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미국 및 판매자가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계열사들과 공유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또한 판매자 및 계열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위치한 판매자 및 그 계열사들의 제삼자 공급자들(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포함)과도 공유될 수 있다. 구매자는 그 직원 및 대표자들에게 본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고지한다. 구매자는 본 조항에 설명되어 있는 목적 또는 구매자가 동의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판매자 및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 위치해 있는 그 계열사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및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직원 및 대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본 조항에 위반하거나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기타 정보 보호 법령에 위반함으로써 인한 청구로부터 판매자 및 그 계열사들을 면책한다.

**17. 변호사 비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법적 행위에 대하여 본 계약서의 약관을 집행할 경우 승소한 측은 합리적 변호사 및 소송비용에 관해 패소한 측에서 상환 받을 권리가 있다

**18. 불가항력.** 판매자는 합리적인 통제 밖의 사건 혹은 상황으로 하여 초래된 잘못 혹은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양도.**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견적서 또는 주문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판매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의무 또는 부분을 계열사나 본 약관과 관련되어 있는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인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있다. 판매자는 제삼자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 유엔협약.** 국제 상품 판매를 위한 계약에 관한 유엔협정은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21.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 a) 당사자들이 모두 미국 주민일 경우 (1) 모든 약관은 법률 규정의 충돌과 무관하게 미국 콜로라도주의 법률 관할을 받는다. (2) 전속 관할권과 본 약관에 관련된 소송, 청구 또는 절차의 심판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의 연방 혹은 주법원에서 진행한다. (3) 당사자들은 모든 소송, 청구 또는 절차에 대해서 콜로라도주가 배타적인 대인관할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 b) 당사자 일방이 미국 주민이 아닐 경우 본 약관의 위반, 병존, 유효성 혹은 집행가능성 등과 관련된 청구 또는 분쟁은 (1) 미국 뉴욕주에서 진행하며 미국중재협회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단일 중재인의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고, (ii) 법률 규정의 충돌과 무관하게 뉴욕주 및 미국의 법률이 본 약관을 규율한다.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다.
- c) 당사자들이 모두 중국 주민일 경우 당사자들은 법률 규정의 충돌과 무관하게 본 약관이 중국법률에 의하여 규율을 받고 이에 따라 해석되는 것에 동의한다.

**22. 통지.** 당사자들은 약관에 따라 요구되는 혹은 허용하는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보이스에 명시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로 이름 있는 야간 또는 국제 택배업체의 확인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발송해야 한다. 통지는 받은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구매자에 의한 본 약관에 따른 통지는 Gates 법무부서를 참조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주소는 아래와 같다: 법무담당임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Fifteenth 가 1144 번, 80202.

**23. 법률의 준수.** 공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적용법률” 을 준수할 것을 진술 및 보장한다. 이는 적용되는 모든 국제, 국가와 현지의 법률과 법규 및 노동과 고용 관련 법률(급여 및 아동 노동 법률), 노동자 안전, 데이터 보안, 소비자 권익보호, 환경보호, 업무, 허가, 인가, 분구,



수입/수출, 운수, 차별금지 및 반부패 관련 법령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2010년 영국의 반뇌물법을 포함한다.

**24. 언어.** 본 약관은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본 계약서의 항목이 편의 또는 법률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의미의 충돌이 있는 경우, 적용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영문본이 우선한다.

**25. 기타.** 대금지급의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 구매자는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술 및 보장으로 인해서 판매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인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본 약관은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를 구성하고 본 약관의 내용과 관련된 당사들 간의 모든 유효한 합의 및 기타 구두 또는 서면 의사연락 내용을 대체한다. 본 약관 중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은 임의로 추가, 수정, 대체 혹은 기타 방식의 변경되지 않는다. 본 약관 중 일부의 내용을 포기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사실은 기타 상황에서도 기타 약관상의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조항의 제목은 단지 참조 목적일 뿐 약관의 해석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약관 중 금지되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즉시 무효로 된 약관 부분을 무효로 된 약관상 당사자의 의도 및 경제적 효과와 가장 근접한 유효적이고 집행력 있는 약관으로 대체하고, 변경된 약관은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약관 제 10-12, 14, 15 및 17-25 조는 본 약관이 종료한 이후에도 유효하다.